「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5일 이은미 의원이 발의하고, 2023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책무(안 제3조)

다. 지원대상, 방법, 내용,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~ 제7조)

라. 효율적 지원을 위한 업무 대행 규정(안 제8조)

마. 지도·감독 및 환수에 대한 규정(안 제9조 ~ 제10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무연고사망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

고인에 대한 애도가 가능하도록 장례를 위한 공공의 지원을

하려는 것으로,

○ 공영장례 지원 대상, 범위, 신청절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하고,

대행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지도·감독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가족 해체,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,

상위법인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으로

'무연고사망자의 처리'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됨에 따라,

기존에 무빈소 직장(直葬) 방식에서

빈소 설치 및 장례의식 의무화,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며

고인의 존엄성 보장 및 장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※ 관련 입법례: 전국 82개 지자체, **도 내 6개 지자체**

(강원도, 고성, 춘천, 삼척, 강릉, 동해)

붙임 1 관계법령 발췌

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1. 28., 2023. 3. 28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,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「민법」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(無緣故 屍身)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28., 2023. 3. 28.>

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21., 2023. 3. 28.>

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[시행일: 2023. 9. 29.] 제12조